

[참 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38
----------	-------

제안년월일 : 1994. 10. 24.

제안자 : 김영수위원외1인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등을 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연장함(안2조)
- 나.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함(안 제5조)
- 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 위임사무 및 시 위임사무 일부포함(안 제6조)
- 라. 의회출석요구를 받은자가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신설(안 제9조)
- 마.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 2)
- 바.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구”를 “대구직할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로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를 “정기회의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구청장”을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3조 제3항 후단에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동조 제7항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중 “당해지방자치단체(구본청 각실과)”를 “대구직할시달서구(구본청 각실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대구직할시달서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
2. 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직할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직할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인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 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에서의 증언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의회는 <u>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u>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u>감사특별위원회</u>(이하 “<u>감사위원회</u>”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u>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u>운영위원회와 협의</u>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u>확정된 감사계획서</u>에 의하여 행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의회의장(이하 “<u>의장</u>”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u>구청장에게 이를 통지</u>하여야 한다.</p> <p>제3조(조사) ①~②(생략)</p> <p>③ 의장은 제2항의 <u>조사발의가 의결</u>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u>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u>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u>조사위원회</u>”라 한다)를 확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신설)</p>	<p>제2조(감사) ① ……<u>대구직할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u> -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p> <p>② ……<u>정기회의 회기내 7일 범위내에서</u>……………</p> <p>③~④ (생략)</p> <p>⑤ ……<u>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u>통보</u>……………</p> <p>제3조(조사)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p> <p>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u>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안)
<p>④~⑥ (생략)</p> <p>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u>통지</u>하여야 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해지방자치단체(구본청 각실과)</u> 2. (생략) 3. <u>당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 4.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u>감사 또는 조사는 법 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u></p>	<p>④~⑥ (현행과 같음)</p> <p>⑦<u>통보</u>.....</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구직할시 달서구(구본청 각실과)</u> 2. (현행과 같음) 3. <u>대구직할시 달서구가 설치한 법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u> 4. (현행과 같음) 5. <u>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u>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u>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u> 2. <u>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직할시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직할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u>

현행	개정 (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u></p> <p>②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p>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안)
(신설)	<p>제9조의 2(증인선서) ① 의장 및 위원장이 <u>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u></p> <p>② <u>참고인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u></p> <p>③ <u>증인선서의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u> 2. <u>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u> 3. <u>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한 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u> 4. <u>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u>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u>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u>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u>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③ (생략)</p> <p>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u>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17조(준용규정)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u>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 회의규칙</u>을 준용한다.</p>	<p>② <u>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사본을 요구한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u></p> <p>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u>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대</u>구직할시 <u>달서구의회에서의 증언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u>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p>제11조(공개의 원칙)<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p>제17조(준용규정)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사항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조사위원회등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의4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 8을 각각 제17조의 6 내지 제17조의 9로 하고 제17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7조의7(중전의 17조의6) 제4항 및 제17조의 9(중전의 제17조의8) 단서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각각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0(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 9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도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지 방 자 치 법

② 委員會가 第1項의 要求를 할때에는 議長을 經유하여야 한다.

第36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① 地方議會는 매년 1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調査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連署가 있어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の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 事務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 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偽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으며, 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 5 節 補 則

第136條(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의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地方公企業의 設置·運營)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地方公企業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工團의 設立) (삭 제)